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33

발의연월일: 2020. 8. 5.

발 의 자: 장경태·오영환·강훈식

전용기 · 김남국 · 박주민

김용민 · 양향자 · 이용빈

민형배 · 최혜영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자로 규정함에 따라, 18세 이상이 된 국민에게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함.

최근 청소년의 정당 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적 전환을 통해 청소년들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.

정당은 시민들의 자율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정당 가입 연령을 반드 시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으며, 청소년들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려는 것임(안 제22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" 을 "16세 이상의 국민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)	제22조(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)
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	① <u>16세 이상의 국민은</u>
<u>는</u>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	
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	
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	
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	
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.	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	
니하다.	,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